국토교통부		보	テスト 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(iù y Spingelland) y Spingelland y Sp	
		배포일시	2018. 1. 16.(화) 총 10매(본문6, 참고4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	담 당 자	 과장 고용석, 사무관 허원석 ☎ (044) 201-3573, 3574 (평택국제대교) 사무관 현기창, 주무관 최영록 ☎ (044) 201-3984, 3576 (용인물류센터) 사무관 임영언, 주무관 박영상 ☎ (044) 201-3577, 3578 	
	사고조사위원회	담 당 자	 (평택국제대교) 위원장 김상효 ☎ (02) 2123-2804 (용인물류센터) 위원장 신종호 ☎ (02) 2049-6081 	
보 도 일 시		2018년 1월 17일(수) 10:00 브리핑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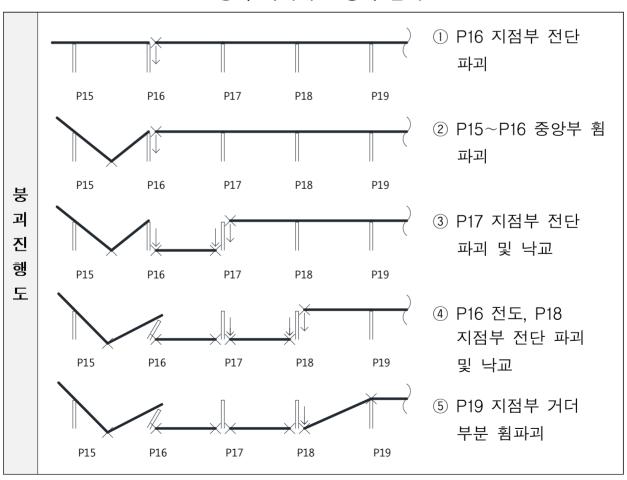
국토부 건설사고조시위, 평택국제대교·용인물류센터 사고조시결과 발표 국토부, 사고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 제재 등 향후계획 설명

- □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(위원장: 연세대 김상 효 교수, 이하 "평택 사고조사위")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(위원장: 건국대 신종호 교수, 이하 "용인 사고조사위")는 17일, 지난 해 8월 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*와 10월 23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**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 - * '17. 8. 26. 평택호 횡단교량(연장 1,350m) 건설현장(지방도 313호선)에서 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구조(거더) 240m가 붕괴(인명 피해는 없음)
 - ** '17. 10. 23. 용인 양지 에스엘시(SLC) 물류센터 신축 중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며 근로자를 덮쳐 6명 사상(사망 1·중상 1·경상 4)
 - 평택 사고조사위는 8월 28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, 용인 사고 조사위는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간 구조·토질·시공·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, 관계자 청문,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.

- □ 평택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.
 -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,
 -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 전단강도*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**를 포함했고,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(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)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으며,
 - * 상부구조인 거더를 자르려는 형태의 힘에 저항하는 강도(shear strength)
 - ** 시공용 받침이 외벽에만 배치되어 있고 중앙부 벽체에는 미배치
 - 강선이 배치되는 **상부 슬래브 두께**(30cm)가 **얇게 계획**되어 적용 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며,
 -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**공사시방서**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**압** 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.
 - 시공단계에서는,
 -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앞서 언급한 설계의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,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고,
 -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, 정착 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, 시공 상세도 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.
 - 아울러, 세그먼트의 **긴장력 도입 중** 정착구 주변 파손,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하여 **많은 보수작업이 진행**된 사실이 있었고,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**국부적 손상**도 있었을 것으로 **추정**된다.
 - 또한, 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 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·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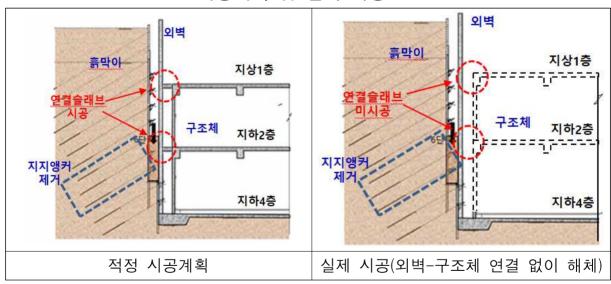
-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,
-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하여 **하도급률**을 산정(76%) 하여야 하나, **간접비**를 **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**(84%) 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,
 - * 하도급률이 82%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발주청의 하도급 적정 심사 필요
- 형식적 시공 상세도 작성,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되었다.
- 앞서 언급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평택 국제대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붕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<평택 국제대교 붕괴 순서>



- □ 용인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.
 - 본 사고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설치한 **흙막이 임시시설**(높이 25~30m)을 해체하던 중 **흙막이**가 붕괴되면서 흙막이와 약 1.5m 이격된 건축물의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전도된 사고로서,
 -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 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었다.
 - 흙막이를 해체할 때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체를
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는데,
 - 본 공사에서는 **구조체**가 **미완성**된 **상태**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**흙막이**의지**지 앵커를 먼저 해체**함 으로써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시공계획 및 실제 시공>



- 이 과정에서,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(前) 작성하여 용인시에 제출한 바 있는 안전관리계획서*를 준수하지 않았다.
 - * 안전관리계획서('16. 5.)에 지하 2층 슬래브를 콘크리트 외벽과 동시 시공하여 구조체 형성 후 앵커를 해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준수
- ※ 건설업자는 2m 이상 가설 흙막이를 설치할 때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기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받아야 하나 해당 절차 미준수(「건진법」 제62조제7항)

- **감리자**는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**현장 기술 관리**가 **소홀**했다.
- 더불어,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(가시설 해체, '17.9~'17.11)임에도 **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**('16.5~'17.3.까지만 배치)**하지 않은 사실** 도 확인하였다.
- 특히, 시공자,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 (土壓)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지 가능한 **옹벽**(擁壁)으로 잘못 이해^{*}하고 있었다.
 - * 예정공정표, 공사일보, 감리일보, 공정회의록 등에서 외벽을 옹벽으로 기재·관리
- □ 양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하여 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.
- □ <u>국토교통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향후</u>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.
 - 이번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"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(一罰百戒)한다."라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,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다.
 -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하여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,
 - 영업·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처분 기관*에 요청할 예정이다.
 - * 업체 영업·업무정지: 시·도지사(건산법, 건진법, 건축사법), 기술자 업무정지: 지방청장(건진법), 허가권자(건축법), 국토부장관(건축사법 자격 취소)

-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과 한국시설 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(www.cosmis.go.kr)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,
- 현재 운영 중인 전국 5개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(회장: 지방국토청장, 산하기관 및 건설안전 관련 기관 참여)를 통해 사고 사례를 전파하여 일선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도 유도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**사고조사 결과**와 양 **사고조사위원회**에서 제안한 **개선사항**을 심도 있게 **검토**하여 현재 마련 중에 있는 **부실시공 방지대책**에 포함시키고,
- **사고 유발업체**에 대해서는 각 **업체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** 도 **요청**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 안전과 허원석 사무관(☎ 044-201-3574),평택국제대교 사고조사위원장 김상효(☎ 02-2123-2804), 용인물류센터 사고조사위원장 신종호(☎ 02-2049-6081)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 명택국제대교 건설공사 개요

- (사업명)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(제2공구, 지방도 313호선)
- (기간/공사비) 2014.3 ~ 2018.12(공정율 58.7%) / 공사비 1,315억원
- (사업내용) 왕복4차로 도로 건설 4.3km, 교량 3개소 1,375m(평택 국제대교 1,350m, PSC 박스거더), 터널 1개소 413m, 토공 2,571m
- (사업구조) 대안입찰(실시설계 원안에 대해 대안을 접수, 시공일괄입찰)
 - ※ (발주) 평택시, (공) 대림산업 외 6개사, (설계) 삼안 외 3개사 (감리) 수성 엔지니어링 외 2개사

<평택국제대교 계획 및 사고위치>



<사고현장 사진>



첨부 2 용인물류센터 신축공사 개요

- (사업명) 양지면 SLC* 물류센터 신축공사(민간공사)
 - * 특수목적법인(SPC)의 형태로 PF를 끌어들여 사업을 하는 회사형태
- (기간/공사비) 2016.4 ~ 2018.2(공정율 66.3%)/ 공사비 839억원
- (사업내용) 물류터미널 1개동(연면적 115천㎡, 지하 5층~지상 4층, PC 구조+철근콘크리트조+일반철골조), 대지면적 75천 m²
- (발주) 양지SLC㈜, (시공) 롯데건설㈜(60%)+선경이엔씨(40%), (설계·감리) ㈜다원그룹건축사사무소, (인허가) 용인시(건축행정과)



<현장조감도>

<사고현장 사진>



첨부 3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개요

- (설치근거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
 - * 구성요건: 사망자 3명↑, 부상 10명↑, 시설물 붕괴 등 **중대건설사고 발생 時**
- (조사내용) 설계·시공 적정 여부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하도급·안전 관리체계 적정성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

□ 평택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

- (운영기간) '17. 8.28(월) ~ '18. 1月末
- (구성) 김상효 교수(위원장) 포함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

구 분	성 명	소 속	직 위	비고
위원장	김상효	연세대학교	교수	교량구조
	박철우	강원대학교	교수	교량구조
토목구조	박기태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연구위원	건설계측 전문가
	유덕용	한국시설안전공단	처장	안전진단
	이상철	에스큐엔지니어링	원장	안전진단
 ㅌ모서게	하상우	대신이엔지(주)	대표이사	교량설계
토목설계 및 시공	최 욱	한국시설안전공단	부장	안전진단
호 이 이	심 별	브이에스엘코리아(주)	상무	유사공법 전문가
	이채규	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	원장	콘크리트 재료 품질
시어코니	신영철	건설경제연구소	소장	하도급 관리
사업관리 분야	김경주	중앙대학교	교수	건설사업관리(감리)
포아	안홍섭	군산대학교	교수	안전관리

□ 용인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

- (운영기간) '17.10.25(수) ~ '18. 1月末
- (구성) 신종호 교수(위원장) 포함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

구 분	성 명	소 속	직 위	비고
위원장 신종호		건국대학교	교수	굴착, 흙막이 등
토질기초 윤태국		토질및기초기술사회	회장	지반설계·시공 적정성
カネユス	최성모	서울시립대학교	교수	건축설계
건축구조	정광량	동양구조안전기술	대표	적정성 검토
시공	김종덕	한국시설안전공단	실장	시공계획 적정성
시티	조성하	㈜다산이엔지	전무	시공절차 준수 여부
E アユス	지광습	고려대학교	교수	토압지지 여부 등
토목구조	박종섭	상명대학교	교수	지하부 설계 적정성
사업관리	이은재	건설계약연구원	대표	인허가, 하도급, 감리
분야	김창덕	광운대학교	교수	사업관리 분야

점부 4 시고경위 및 내용

□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

- (사고일시) '17. 8. 26(토) 15:20경
- (**사고경위**) 평택호 횡단교량의 건설을 위해 접속교량 상판(상부거더) 980m 중 405m를 시공한 상태에서 **상판 240m 붕괴**(인명피해 없음)
- (조치상황) 우리부는 사고 직후「건설사고조사위원회」를 구성 하여 운영 중(8.28~)에 있으며,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현재 현장은 전면 공사중지 상태
 - ※ 사고교량 하부에 위치한 국도43호선의 경우 사고 직후 전면 교통통제를 실시하였고, 국도 상부에 사고교량의 잔존상판 철거 후 9.9 교통 재개

□ 용인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

- (사고일시) 2017. 10. 23(월) 10:30경
- (사고경위) 물류센터 신축 중 흙막이 가시설과 건축물 외벽이 붕괴되며 인근의 근로자를 덮쳐 6명 사상(사망 1·중상 1·경상 4)
- (조치상황) 사고 직후 사고조사위원회 구성·운영 중(10.25~)이며,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현장은 현재 공사중지 상태*
 - * 조사를 위한 발굴과 2차 붕괴방지를 위한 사면경사 완화공사는 시행